

의안번호	제313호
의결 연월일	2012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장선배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4월 16일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장선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4월 16일

발 의 자 : 장선배, 심기보, 노광기,
강현삼, 김광수, 김도경,
손문규

1. 개정이유

- 재해구호·노인복지·장애인복지·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자립장학금 사업
용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심의를 현행
조례에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
-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
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현행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
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
(안 제5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(안 제4조 및 제10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붙임
-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략) ②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,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범위에서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사회복지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되, 그 기능은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. ② (생략)	제5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지원사업) ①~③ (생략)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 ⑤ (생략)	제10조(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지원사업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 및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
4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부의하는 사항

□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

제3조(결정사항) 도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 (개정 99. 1. 15)

1.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대책
2.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
3.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
4. 공무원 국외훈련 심사
5.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·발전에 관한 사항

6. 각종가격 및 요금의 조정
7. 품질관리의 정착을 위한 시책의 연구·발전에 관한 사항
8.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9.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
10. 근로청소년 장학생 심사등에 관한 사항
11.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에 관한 사항
12.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중 다음 사항
 - 가.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
 - 나. 삭제 <2009. 7. 10>
 - 다.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심사
 - 라.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
 - 마. 충청북도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(개정 2001. 9. 13)
 - 바. (삭제 2005. 5. 13)
 - 사. 외국인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구호 협의
 - 아. (삭제 2001. 2. 9)
 - 자. (삭제 2001. 2. 9)
13. 기타 도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(개정 99. 1. 15)